#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44

발의연월일: 2020. 7. 2.

발 의 자: 김주영·신정훈·권칠승

이병훈 · 김정호 · 김홍걸

강훈식 · 김승원 · 문진석

송영길 · 강선우 · 박영순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와 판매 등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차 단하기 위해 석유사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보고받아 이상징후를 사전 에 포착할 수 있도록 수급보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고자료가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반영해 비밀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단속을 목적으로 한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렇지만 현행법의 정보 활용에 대한 규정이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에서 각각 소관하는 법률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석유거래 자료규정과 상충돼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게다가 석유거래정보가 에너지나 환경 등 관련 산업계의 동향분석 이나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가치가 높은 상황에서 현행법의 과도 한 비밀유지 원칙이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석유거래정보의 비밀유지를 완화할 수 있는 일부 조건들을 신설함으로써 비밀유지 원칙은 고수하되, 가짜석유제품의 불법제조 및 판매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근절하고, 유연한 석유거래정보 활용도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자 함.

한편 현행법에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를 신고대상으로 규정, 신고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최근 가짜석유제품의 불법행위는 2015년 236건, 2016년 250건, 2017년 231건, 2018년 177건, 2019년 58건 등으로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임. 반면 등유를 차량용연료로 판매하는 불법행위는 2015년 119건, 2016년 192건, 2017년 242건, 2018년 301건, 2019년 133건으로 여전히 성행하고 있음.

그렇지만 가짜석유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부재해 적극적인 신고와 단속의 유인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 내 신고포상제 지급대상에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신고포상 지급대상의 범위를확대하고자 함(안 제38조의3제2항 및 제41조의2제1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근거하여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1. 「국세기본법」,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3.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 4.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 5. 석유사업의 정책수립 및 연구목적 정보의 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1조의2제1항 중 "제29조제1항을"을 "제29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제8호를"로, "제조 등의 위반행위를"을 "제조, 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3(비밀유지) (생 략)	제38조의3(비밀유지)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u> &lt;신 설&gt;</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근거하여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
	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
	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
	<u>할</u> 수 있다.
	1. 「국세기본법」, 「과세자료
	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
	<u> </u>
	3.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
	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u>경우</u>
	5. 석유사업의 정책수립 및 연
	구목적 정보의 작성 및 활용
	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산 제41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 항을 위반하여 가짜석유제품 제 조 등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관 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 보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 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략)

#### 으로 정하는 경우

-----제29조제1 항 및 제39조제1항제8호를--제 조, 등유 등의 석유제품을 「자 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 하는 행위 등을----

----.

② (현행과 같음)